|  |  |  |
| --- | --- | --- |
| **재정부 세정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의****개인소득세 183일 거주기간** **판정 기준에 관한****기자간담회** 2019년3월16일 출처: 세정사며칠 전 재정부,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재정부, 세무총국의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4호, 이하<공고>)를 발표하였다. 재정부 세정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는 <공고>의 유관 문제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1. Q: <공고> 실시 후, 경외 인사가 경외소득세 면세 혜택을 누리는 조건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A: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거주자 개인의 기간 판정기준을 경내 거주 만 1년에서 만 183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외자 유치와 외국인의 중국근무 장려, 대외교류 촉진을 위해 새로운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계속하여 기존 조례 경외에서 지급하는 경외소득에 대한 징수면제 혜택 제도 안배를 보류하였으며, 나아가 면세조건을 보다 더 완화하였습니다.첫번째는 면세조건인 거주 납세자 구성이 5년 미만에서 연속 6년 미만으로 완화된 것입니다.두번째는 1개년도 중, 1차례 출국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속 거주연한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세번째는 관리방식을 주관세무기관 비준에서 비안으로 바뀌었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가 편리해졌습니다.<공고>에서는 또한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인 경우,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지 않고, 연속거주 “만 6년”의 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며, 2019년 이전의 연한은 더 이상 계산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명확히 해두었습니다.이처럼 경내에서 근무하는 경외인사(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포함)의 경외소득 면세조건이 기존보다 더욱 완화되었습니다.2. Q: 경외인사(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포함)가 경내에 거주하는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A: <공고> 규정에 따라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인 경우,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고, 24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경내 거주일수에 계상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이선생님이 홍콩 거주자이면서 심천에서 근무를 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 심천에 와서 출근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홍콩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요일과 금요일 당일 체재하는 시간이 모두 24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 2일 역시 계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매주 계상하는 일수는 단지 3일이며, 1년 52주로 계산하면 이선생님의 1년간 경내 거주일수는 156일이고,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이선생님이 취득한 모든 경외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3. Q: 경외인사(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포함)가 경내에 연속 거주하는 “만 6년”은 어느 연도를 기점으로 계산하나요?A: <공고> 규정에 따라 경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연속 “만 6년”을 기점으로 2019년(포함)이후 연도부터 계산하며, 2018년(포함)이전 이미 거주한 연도는 일률적으로 ‘0’이 되며,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24년(포함) 이전, 주소지가 없는 모든 개인이 경내에 거주하는 연한이 6년 미만이면, 그 취득한 경외에서 지급한 경외소득 모두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부터 임의 1개년도중 만약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이전 연속연한은 ‘0’이 되며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장선생님이 홍콩 거주자이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심천에 와서 근무를 하고, 2026년 8월 30일 홍콩으로 돌아가 근무를 한다면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 잠깐 홍콩으로 돌아가 공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잔여 기간은 계속 심천에 머무르게 됩니다.장선생님이 경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 만약 2013년부터 계산을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만 6년이지만 2018년 이전의 연도는 일률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계산을 시작해 2019년부터 2024년 기간 장선생님의 경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연속 만 6년이 되지 않으면 그 취득한 경외에서 지급한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장선생님의 경내 거주가 만 183이고, 2019년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경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이미 연속 만 6년(2019년-2024년)이고,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한 상황이 없으면, 2025년 장선생님은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026년, 장선생님이 2025년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한 상황이(2025년2월1일-3월15일)있기 때문에 중국 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속 연한은 ‘0’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기에 2026년 장선생님이 취득한 경외에서 지급한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财政部税政司、税务总局所得税司、****税务总局国际税务司负责人****就个人所得税183天居住时间判定标准****答记者问**2019年3月16日 来源：税政司 日前，财政部、税务总局联合印发《财政部 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居住时间判定标准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34号，以下简称《公告》）。财政部税政司、税务总局所得税司、税务总局国际税务司负责人就《公告》有关问题回答了记者的提问。　　1.问：《公告》实施后，境外人士享受境外所得免税优惠的条件有什么变化？答：新的个人所得税法将居民个人的时间判定标准由境内居住满一年调整为满183天，为了吸引外资和鼓励外籍人员来华工作，促进对外交流，新的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继续保留了原条例对境外支付的境外所得免予征税优惠制度安排，并进一步放宽了免税条件：一是将免税条件由构成居民纳税人不满五年，放宽到连续不满六年；二是在任一年度中，只要有一次离境超过30天的，就重新计算连续居住年限；三是将管理方式由主管税务机关批准改为备案，简化了流程，方便了纳税人。　　《公告》还明确：在境内停留的当天不足24小时的，不计入境内居住天数；连续居住“满六年”的年限从2019 年1 月1 日起计算，2019 年之前的年限不再纳入计算范围。　　这样一来，在境内工作的境外人士（包括港澳台居民）的境外所得免税条件比原来就更为宽松了。　　2.问：境外人士（包括港澳台居民）在境内居住的天数如何计算？答：按照《公告》规定，在中国境内停留的当天满24小时的，计入境内居住天数；不足24小时的，不计入境内居住天数。　　举例来说，李先生为香港居民，在深圳工作，每周一早上来深圳上班，周五晚上回香港。周一和周五当天停留都不足24小时，因此不计入境内居住天数，再加上周六、周日2天也不计入，这样，每周可计入的天数仅为3天，按全年52周计算，李先生全年在境内居住天数为156天，未超过183天，不构成居民个人，李先生取得的全部境外所得，就可免缴个人所得税。　　3.问：境外人士（包括港澳台居民）在境内连续居住“满六年”，从哪一年开始起算？答：按照《公告》规定，在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连续“满六年”的起点，是自2019年（含）以后年度开始计算，2018年（含）之前已经居住的年度一律“清零”，不计算在内。按此规定，2024年（含）之前，所有无住所个人在境内居住年限都不满六年，其取得境外支付的境外所得都能享受免税优惠。此外，自2019年起任一年度如果有单次离境超过30天的情形，此前连续年限“清零”，重新计算。举例来说，张先生为香港居民，2013年1月1日来深圳工作，2026年8月30日回到香港工作，在此期间，除2025年2月1日至3月15日临时回香港处理公务外，其余时间一直停留在深圳。　　张先生在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如果从2013年开始计算，实际上已经满六年，但是由于2018年之前的年限一律“清零”，自2019年开始计算，因此，2019年至2024年期间，张先生在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连续不满六年，其取得的境外支付的境外所得，就可免缴个人所得税。　　2025年，张先生在境内居住满183天，且从2019年开始计算，他在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已经连续满六年（2019年至2024年），且没有单次离境超过30天的情形，2025年，张先生应就在境内和境外取得的所得缴纳个人所得税。　　2026年，由于张先生2025年有单次离境超过30天的情形（2025年2月1日至3月15日），其在内地居住累计满183 天的连续年限清零，重新起算，2026年当年张先生取得的境外支付的境外所得，可以免缴个人所得税。 |